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구감소지역 소재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48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광석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인구감소지역 소재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2

I. 개요

1.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4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원이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6. 28.
- (3) 회 부 일 : 2024. 7.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방의료원이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중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등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운영비 국고보조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신설).

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이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거나 출연·보조할 때 제3항에 따라 조사된 비용을 고려하여 지원의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 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¹⁾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국가가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에 따라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²⁾에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라 하겠음.

-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 2023.9., 84~88쪽

시행령」 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며, 2024년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지방의료원은 총 9개소임.

<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소재 지방의료원 현황 >

시·도	시·군·구	지방의료원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대구의료원(서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삼척의료원(삼척시) 영월의료원(영월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공주의료원(공주시)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남원의료원(남원시) 진안군의료원(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강진의료원(강진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안동의료원(안동시) 울진군의료원(울진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행정안전부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https://rhs.mohw.go.kr/>)

□ 다만, 현행법에서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역할을 구별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주체⁴⁾라는 점을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도에 속한 시·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감안하면,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의 운영비는 해당 시·군·구가 속한 시·도가 우선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의료기반 확충을 위하여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시설 및 인력 확충과 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로서 하여금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을 통하여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게 되는 경우 중복 지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3조(의료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노인의 만성질환 예방·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과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설치와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심혈관·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요료를

4)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신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分院(分院)을 둘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인력, 의료서비스의 품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시설 및 인력 확충과 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에 의료인력 지원, 시설·장비 보강, 경영혁신 지원 등 다양한 재정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다만,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설립·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인구감소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동 원칙의 예외 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약화 우려가 있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기획재정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설립·시설·장비비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의 조항이 신설되면 시·도립 기관임에도 정부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또한, 동 조항 포함시 의료수요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지자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가능성이 높아져 효율적 재정운용을 저해하게 됨.

□ (대한의사협회) 비효율적이고 부실한 경영으로 만성 적자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국고보조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공공투자의 효율성과 국가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지방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 및 감염병 대응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방의료원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의료의 정의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적 재정으로 공급되는 의료로 재정립하여,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세분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9

【참고】	지방의료원 재정 현황 (최근 5년간)
-------------	-----------------------------

(단위: 백만원)

연번	시도	기관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	서울	서울의료원	-9,905	4,051	4,396	-26,889	-37,955
2	부산	부산의료원	4,775	3,608	29,025	-3,686	-17,850
3	대구	대구의료원	-2,475	4,482	22,476	13,482	-11,670
4	인천	인천의료원	3,318	13,712	20,461	6,317	-11,370
5	경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481	1,923	9,636	2,626	-11,388
6	경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215	2,315	2,705	-3,378	-9,273
7	경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1,199	3,518	20,913	446	-10,037
8	경기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959	4,962	25,005	10,072	-4,210
9	경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1,976	4,109	10,889	1,755	-10,991
10	경기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269	1,239	10,406	1,701	-9,576
11	경기	성남시의료원	개원전	-7,980	27,659	1,259	-23,701
12	강원	강릉의료원	-39	-876	10,410	2,070	-5,179
13	강원	속초의료원	256	-1,394	10,771	2,140	-6,168
14	강원	원주의료원	3,276	3,664	5,692	8,671	4,985
15	강원	삼척의료원	4,037	224	5,397	-143	-4,401
16	강원	영월의료원	-520	365	-2,892	124	-3,682
17	충북	청주의료원	405	-2,234	6,914	-2,800	-15,473
18	충북	충주의료원	-50	-2,173	4,505	10,638	-11,273
19	충남	천안의료원	-935	-824	15,075	-215	-10,640
20	충남	공주의료원	-450	-1,234	13,222	585	-8,494
21	충남	서산의료원	-544	-1,844	5,832	6,338	-6,784
22	충남	홍성의료원	-826	-4,357	20,045	3,289	-12,076
23	전북	군산의료원	6,107	2,816	14,790	7,623	-8,422
24	전북	남원의료원	-1,565	-6,017	13,058	4,413	-13,927
25	전북	진안군의료원	-777	-1,004	-330	77	-80
26	전남	순천의료원	-888	388	6,352	4,555	-1,825
27	전남	강진의료원	-1,995	-743	4,619	1,220	-3,522
28	전남	목포시의료원	404	1,387	9,660	7,658	-1,951
29	경북	김천의료원	3,014	1,142	2,416	6,574	-5,317
30	경북	포항의료원	129	919	16,549	6,857	-4,384
31	경북	안동의료원	-1,539	-1,038	14,186	8,726	-3,224
32	경북	울진군의료원	1,581	1,416	52	-693	52
33	경남	마산의료원	4,731	4,794	13,445	464	-10,566
34	제주	제주의료원	-732	352	2,144	4,560	-5,006
35	제주	서귀포의료원	2,707	-1,618	5,566	1,310	-12,012

* 자료: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https://rhs.mohw.go.kr>)